

의안번호	제 60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11월 2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0
----------	-----

제출연월일 : 2020년 11월 2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신설 사항과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 신설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안 제9조의3)
 - 존속기한 : 2022. 12. 31.까지 (경제부지사 소관)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분장사무 신설 (안 제9조의3)
 -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 조항 신설 (안 제6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소방본부 분장사무 중 현행 업무에 맞게 자구 조정 (안 제1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바이오산업국”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바이오산업국”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호 중 “도민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소방항공구조대”를 “소방항공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소방종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을 “119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6장(제6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제63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환경 분과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지사) ①·② (생략)</p>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u>바이오산업국</u>,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공항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p> <p>2·3. (생략)</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u>바이오산업국</u>,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및 환경산림국을 둔다.</p> <p>② (생략)</p> <p><신 설></p>	<p>제4조(부지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u>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u>-----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 ----- ----- <u>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3(<u>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u>) <u>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u></p>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생략)
11.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2.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
-----.

1. ~ 6. (현행과 같음)
7. 안전체험관 -----
--
8. 소방항공대 -----
--
9. 119종합상황실 -----
--
10. (현행과 같음)
11. 119특수구조단 -----

제6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제63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평
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달성 여
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

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
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
가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